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미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77 발의연월일: 2020. 7. 29.

발 의 자 : 윤미향ㆍ이탄희ㆍ김영배

유동수 · 고용진 · 천준호

안호영 · 이학영 · 송옥주

장철민 • 양이원영 • 민병덕

이규민 · 임종성 · 김민철

윤준병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.

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·대우 등에서 불합리에 차별을 받은 경우에도 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권익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「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2조의2제1호 및 제1

5조제4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47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호 중 "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남 너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15조제4항 중 "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노동위원회의 소관 사	제2조의2(노동위원회의 소관 사
무)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	무)
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	1
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	
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	
법률」, 「교원의 노동조합	
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	
률」, 「공무원의 노동조합	
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	
률」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	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
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	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
및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	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
<u>한 법률」</u> 에 따른 판정·결정	법률」 및 「남녀고용평등과
·의결·승인·인정 또는 차	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
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	<u>법률」</u>
무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회의의 구성 등) ① ~ ③	제15조(회의의 구성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	4
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	

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 명으로 구성하며, <u>「기간제 및</u>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차별 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 을 처리한다.

-----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| 또는 「파견근로자보호 법률」,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_ -----

⑤ ~ ⑨ (생 략)

⑤ ~ ⑨ (현행과 같음)